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36
----------	------

발의연월일 : 2017. 3. 31.

발의자 : 백혜련 · 김현권 · 박선숙  
박정 · 박주민 · 소병훈  
신창현 · 우원식 · 이재정  
정성호 · 조응천 · 최인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 중 “자”를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 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을 “제8조제2 항, 제13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생 략)</p> <p>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 략)</p> <p>5. <u>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u>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p> <p>6. ~ 8. (생 략)</p> <p>② (생 략)</p>	<p>제25조(별칙) -----</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p> <p>-----자 또는 같은 조 제5 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 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제26조(과태료) ①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 는 같은 조 제5항을</u>-----</p> <p>-----</p> <p>-----.</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